

## 과 태 료 부 과 통 지 서

제 호

1. 업체(상호)명 :
2. 소 재 지 :
3. 주 소 :
4. 대 표 자 :

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
5. 위반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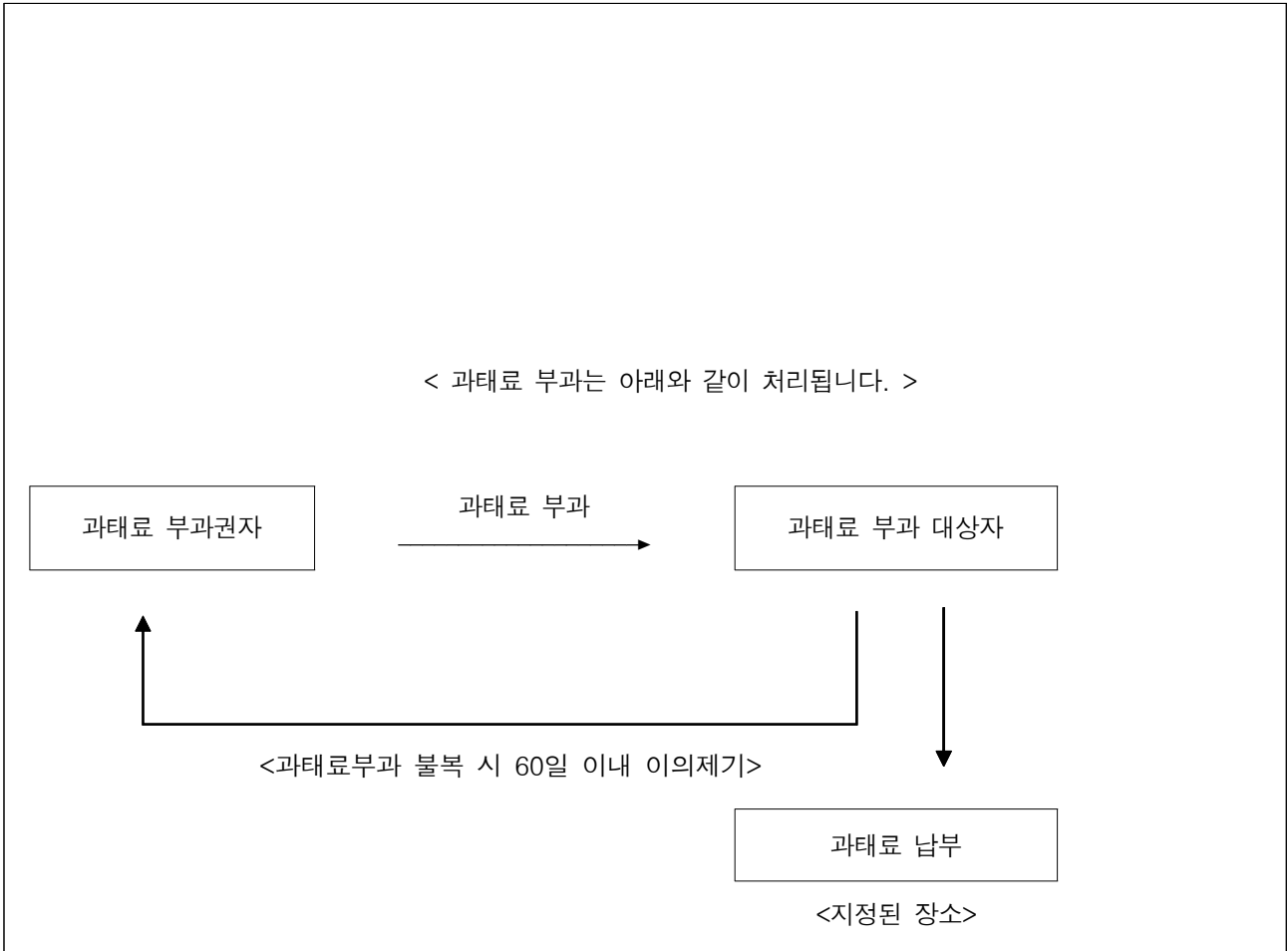
위반일시	위반장소	조사기관	위반행위	위반내용

6. 부과내역: 과태료            원
7. 납부일자 및 장소: 납부고지서에 의함
8.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

년    월   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



<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>

1.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.
2.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.
3.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5.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.